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97호 2022. 9. 22.(목)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2-1274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 사천시 공고 제2022-1286호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7
- 사천시 공고 제2022-1291호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7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사천시 공고 제2022-1274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이·통장 임명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통장 선출 및 운영에 있어 관련 조문 해석에 대한 빈번한 혼란 및 혼선 방지를 위해 명확한 규정을 정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이·통·반장의 3년 이상 거주 자격 요건 삭제(안 제2조)

나. 마을회에서 추천하는 인원(2명 이상) 규정 삭제, 심사기준표 및 면접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기준표 마련, 연임 제한 예외 규정 마련(안 제4조)

다. 이·통장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의2)

라. 이·통·반장 임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6, FAX : 831- 6021)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2022 - 제 호
번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행정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이·통장 임명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통장 선출 및 운영에 있어 관련 조문 해석에 대한 빈번한 혼란 및 혼선 방지를 위해 명확한 규정을 정립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이·통·반장의 3년 이상 거주 자격 요건 삭제(안 제2조)

나. 마을회에서 추천하는 인원(2명 이상) 규정 삭제, 심사기준표 및 면접기준표 마련, 연임 제한 예외 규정 마련(안 제4조)

다. 이·통장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의2)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라. 이·통·반장 임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9. . ~ 2022. 10.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사천시 규칙 제 호

##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을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통장”을 “이·통·반장”으로,

“리·통에 3년 이상(단, 신설 리·통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거주하는”을 “리·통·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을회의”를 “제2조에 따라 마을회(마을 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통장은 마을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추천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단, 마을회의 추천”을 “다만, 마을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공개모집은”을 “모집 공고는”으로, “공고”를 “게시(단, 후보자가 없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는 경우에는 7일 이상 재모집 공고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심사기준은 거주기간, 봉사경력, 상훈, 면접 등” 을 “심사는 별표 4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 5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로,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을 “공정하게 하여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를 “하되, 두 차례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을 “변경하려는” 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를 “주민자치회의 협의” 로, “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제3호·제4호·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읍·면·동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 이·통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필요시 구성하고, 심사” 를 “심사” 로, “해산” 을 “해산한다” 로 한다.

2. 위원: 기관단체장, 주민대표 등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구성하며, 심사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을 “변경하려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는” 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를 “주민자치회의 협의” 로 한다.

① 반장은 이·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통·반장을 임명한 때에는 임명결과” 를 “이·통·반장의 임명·해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 결과” 로, “5일이내에 도지사” 를 “5일 이내에 경남도지사”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명·해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서식의 등록 대장에 기록하고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별표 4 및 별표 5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이·통·반장의 자격) ① 이·통·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u>시민</u>으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p> <p>1.·2. (생략)</p> <p>② <u>이·통장</u>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민으로서 당해 <u>리·통</u>에 <u>3년 이상(단, 신설 리·통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u>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시민으로 한다.</p> <p>제3조(이·통장의 추천) ① 이·통장의 임기가 만료된 마을에서는 임기만료 10일 전에 <u>제2조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을회의</u>에서 선정된 후보자를 읍·면·동장에게 추천한다.</p> <p>② 이·통장이 임기만료 이전에 결원이 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일 이내에 <u>제1항의 규정에 따라</u> 후보자를 읍·면·동장에게 추천한다.</p> <p>제4조(이·통장의 임명과 정수 등)</p>	<p>제2조(이·통·반장의 자격) ① --- ----- <u>사</u> <u>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u>- ----- ----- -----.</p> <p>1.·2. (현행과 같음)</p> <p>② <u>이·통·반장</u>----- ----- <u>리·통·반</u> <u>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u> <u>있는</u> ----- -----.</p> <p>제3조(이·통장의 추천) ① ----- ----- ----- <u>제2조에 따라 마을회(마을</u> <u>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u> <u>의를 말한다)</u>-----.</p> <p>②----- ----- <u>제</u> <u>1항</u>----- -----.</p> <p>제4조(이·통장의 임명과 정수 등)</p>

① 읍·면·동장은 마을회에서 2  
사람 이상의 추천을 받아 책임자를  
임명한다. 단, 마을회의 추천이 없  
거나 마을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마  
을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명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 조례」 제9  
조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  
권으로 임명한다.

③ 공개모집의 절차와 적격자의 심  
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개모집은 14일 이상 읍·면·  
동의 홈페이지 및 관할 구역 안  
의 게시판에 공고
2. 심사기준은 거주기간, 봉사경  
력, 상훈, 면접 등 자체 실정에  
맞게 항목을 정하여 공정한 심사

① 이·통장은 마을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추천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회에서 추천  
한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제3호·제4  
호·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모집 결  
과 후보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

③ -----  
-----.

1. 모집 공고는 -----  
-----  
----- 게시(단,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재모집 공고  
를 한다)
2. 심사는 별표 4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 5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  
----- 공정하게 하여야 --

가 되도록 함.

④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  
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⑤ (생략)

⑥ 이·통장의 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  
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공고  
한다.

제4조의2(이·통장 심사위원회) ①  
읍·면·동장은 제4조제2항을 심  
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7명 이내로 지역실정에 맞게 다  
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  
라 구성하여야 한다.

1. (생략)

2. 위원: 지역 시의원·기관단체  
장 3명, 이·통장 대표 1명 및  
해당 리·통 주민대표 2명. 이때  
심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는 위  
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하고, 심

-----.

④ ----- 하되,  
두 차례만 -----.

⑤ (현행과 같음)

⑥ ----- 변경하려는 ---  
----- 주민자치회의  
협의-----  
----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제4조의2(이·통장 심사위원회) ①  
읍·면·동장은 제4조제3항에 따  
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 이·통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  
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  
-----  
-----.

1. (현행과 같음)

2. 위원: 기관단체장, 주민대표 등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구성  
하며, 심사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  
다.

3. ----- 심사-----

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

제6조(반장의 임명과 정수 등) ① 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1. 제2조제1항을 준용
2. 주민의 의견을 들어 이·통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반장의 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공고한다.

제7조(보고) 읍·면·동장은 이·통·반장을 임명한 때에는 임명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통·반장 정수를 확정·공고하였을 때에는 이·통·반장 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 해산한다.

제6조(반장의 임명과 정수 등) ① 반장은 이·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② -----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변경하려는 ----- 주민자치회의 협의-----.

제7조(보고) ① ----- 이·통·반장의 임명·해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 결과----- 5일 이내에 경남도지사-----.

②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명·해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서식의 등록 대장에 기록하고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별표 4]

## **이장·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제4조제3항제2호 관련)

심사대상자( 읍·면·동 리·통)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택)
주소					(휴대폰)		

심사기준 (기준일: 공고일 현재)

심사항목 (비율)	배점기준	배점	특점	비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리·통 관할구역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적합산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0년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li> <li>※ 신설 리·통의 경우 해당 읍·면·동 거주기간으로 함</li> </ul>
	7년 이상 ~ 10년 미만	13		
	4년 이상 ~ 7년 미만	11		
	1년 이상 ~ 4년 미만	9		
	1년 미만	5		
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	250시간 이상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li> </ul>
	200시간 이상 ~ 250시간 미만	13		
	150시간 이상 ~ 200시간 미만	11		
	150시간 미만	9		
	봉사활동 경력 없음	5		
3. 이장·통장 활동 집중도 (10)	없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장·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li> </ul>
	있음(자영업)	7		
	있음(직장인)	5		
4. 최근 5년간 상훈 (5)	장관급 이상, 사천시장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li> <li>•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를 말함</li> </ul>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3		
	그 밖에 행정기관	1		
	없음	0		
5. 이장·통장 활동 경력 (5)	3년 이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미만일 경우 '0점'</li> </ul>
6. 면접(50)		50		
<b>총 계</b>		<b>100</b>		
<b>확인자(읍·면·동장)</b>		직급	성명	(인)

※ 상기 심사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별표 5]

## 이장·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제4조제3항제2호 관련)

□ 면접대상자( 읍·면·동 리·통)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택)
주소							(휴대폰)

□ 면접기준

심사항목 (비율)	배점기준	배점	특점	비고 (인정조건 등)
1. 안보관, 지원동기 및 포부(10)	우수	8~10		• 올바른 역사 인식, 안보관 • 지원동기 • 포부 및 향후 활동계획 등
	보통	4~7		
	미흡	0~3		
2. 지역 현안사항 관심도(10)	우수	8~10		• 시 및 읍·면·동 현황 인지도 • 역점 추진사업 숙지여부 등
	보통	4~7		
	미흡	0~3		
3. 시정 참여 의욕도(10)	우수	8~10		• 참여 적극성 • 시정 협조 의지 등
	보통	4~7		
	미흡	0~3		
4. 이장·통장 직무수행능력(10)	우수	8~10		• 이장·통장 임무 숙지 여부 • 주민 갈등 시 역할 • 다양한 상황발생 시 대응력 등
	보통	4~7		
	미흡	0~3		
5. 인품, 태도 등(10)	우수	8~10		• 성품, 건강상태 • 리더십, 성실성, 도덕성 • 지역주민 여론 등
	보통	4~7		
	미흡	0~3		
<b>총 계</b>		<b>50</b>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읍·면·동 실정에 따라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

[별지 서식]

## [읍·면·동] 이장·통장 임명·해임 등록 대장

결 재			연도	소 속 (리·통)	인 적 사 항				임명 일자	해임 일자	비고
읍면동장	팀장	담당자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사천시 공고 제2022-1286호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제정, 2023.1.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답례품 종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고향사랑기금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 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및 제22조)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http://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52, FAX: 831-6011)

# 사 천 시 공 보

제 797 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 안	2022 - 제 호
번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 1. 의결주문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제정, 2023.1.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답례품 종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고향사랑기금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및 제22조)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2023년 당초예산 반영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9. . ~ 2022. 10.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천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선정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 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시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시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구입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공무원 등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3. 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기금 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

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

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 4. 제2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관 련 법 규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사천시 공고 제2022-1291호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당연직 위원 등의 직위를 명시하지 않고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직개편 등으로 직위 변동 시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간사 및 당연직 위원 직위 명시 규정 정비(안 제7조제1항 및 안 제9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조제3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5, FAX : 831- 6021)

# 사 천 시 공 보

제 797 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행정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당연직 위원 등의 직위를 명시하지 않고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직개편 등으로 직위 변동 시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간사 및 당연직 위원 직위 명시 규정 정비(안 제7조제1항 및 안 제9조제3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9. . ~ 2022. 10.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에” 를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에” 로 하고, 같은 호 및 제2호 중 “자를” 을 각각 “사람을”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를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사천시의회 의장, 사천경찰서장,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사천소방서장”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찰서 경무과장” 을 “사천경찰서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간사인 경찰서 경무과장이” 를 “협의회의 간사가”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서무팀장” 을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 으로 한다.

1. 사천시청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
2. 사천경찰서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

# 사 천 시 공 보

제797호

3. 사천교육지원청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

4. 사천소방서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u>시</u>에 주소를 둔 <u>자</u>를 말한다.</p> <p>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u>시</u>에 주소를 둔 <u>자</u>를 말한다.</p> <p>3. ~ 6. (생략)</p> <p>제3조(협의회 설치) ① 사천지역 범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u>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u>」(이하 “<u>협의회</u>”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제4조(협의회 구성) ① (생략)</p> <p>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u>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u>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p> <p>1. ~ 4. (생략)</p> <p>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p>	<p>제2조(정의) ----- -----</p> <p>1. ----- <u>사천시(이하 “시”라 한다)</u>에 ----- -- <u>사람을</u> ---.</p> <p>2. ----- ---- <u>사람을</u> ----.</p> <p>3. ~ 6. (현행과 같음)</p> <p>제3조(협의회 설치) ① ----- ----- <u>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천시의회 의장, 사천경찰서장,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사천소방서장</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7조(간사) ① ----- -----</p>

두되 간사는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인 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생략)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청 행정과장

2. 경찰서 경무과장

3. 교육지원청 관리과장

4.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서무팀장

6. (생략)

④ (생략)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천경찰서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실무협의회) ① -----  
----- 협의회  
의 간사가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사천시청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

2. 사천경찰서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

3. 사천교육지원청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

4. 사천소방서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

5. ----- 지역치안 업무담당 부서장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삭제>